

< 변경 대비 표 >

1. 변경 대상 투자신탁 : 키움 KIWOOM 200Total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예정일: 2026년 09월 18일
3. 주요 변경사항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인하
4. 변경사항

[집합투자규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2. 지정참가회사 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u>0.05</u>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평균 잔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2. 지정참가회사 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u>0.03</u>
부칙	<u><신설></u>	<u>(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6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한다.</u>

[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u>[변경전1]</u>	<u>[변경후1]</u>
운용전문인력	-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인하</u>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1) 운용전문인력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u>[변경전2]</u>	<u>[변경후2]</u>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신설></u>	<u>[변경후3]</u>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작성일 및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4) 운용자산규모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	-------	-------

요약정보		
투자비용	[변경전1]	[변경후1]
운용전문인력	-	작성일 기준으로 갱신

[\[변경전1\]](#)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지정참 가회사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없음	<u>0.012</u>	0.001	1.60	<u>0.057</u>	<u>6</u>	<u>12</u>	<u>18</u>	<u>32</u>	<u>73</u>

[\[변경후1\]](#)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지정참 가회사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없음	<u>0.010</u>	0.001	1.60	<u>0.055</u>	<u>6</u>	<u>12</u>	<u>18</u>	<u>31</u>	<u>71</u>

[\[변경전2\]](#)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지정 참가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 총보수 ·비용(피투자 집합투 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 비용
투자신탁	0.001	0.001	0.005	<u>0.005</u>	<u>0.012</u>	1.60	0.0351	<u>0.0471</u>	<u>0.0569</u>	0.0204
지급시기	매3개 월/사유 발생시	매3개 월/사유 발생시	매3개 월/사유 발생시	매3개 월/사유 발생시	-	-	사유발 생시	-	-	사유발 생시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천원)

투자기간	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u>5</u>	<u>10</u>	<u>15</u>	<u>27</u>	<u>61</u>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u>6</u>	<u>12</u>	<u>18</u>	<u>32</u>	<u>73</u>

[\[변경후2\]](#)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집합 투자 업자 보수	지정 참가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 총보수 ·비용(피투자 집합투	증권 거래 비용

									자기구 보수 포함)	
투자신탁	0.001	0.001	0.005	0.003	0.010	1.60	0.0351	0.0451	0.0549	0.0204
지급시기	매3개 월/사유 발생시	매3개 월/사유 발생시	매3개 월/사유 발생시	매3개 월/사유 발생시	-	-	사유발 생시	-	-	사유발 생시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천원)

투자기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	9	15	26	5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6	12	18	31	71

[변경후3]

※ 보수를 책정의 합리성과 운용 품질 영향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보수율 책정에 관한 사항은 집합투자업자의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수율의 시장 경쟁성, 운용 품질 영향, 장기 수익률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보수율이 책정되었으며, 집합투자업자의 내부 "상품전략위원회주1)"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1. 보수율 책정에 따른 운용 품질에 대한 영향

- 집합투자업자(키움투자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 품질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내부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 배분을 최적화하고, 축적된 운용 경험과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타 부문(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비용전가 여부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보수율 및 타 부문의 보수율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책정되었으며, 특정 기관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 모든 계약은 투명하고 자율적으로 체결되었으며, 협력사의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3. 보수율 책정으로 인한 추후 품질유지 방안

- 이 투자신탁은 ETF운용본부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리서치, 글로벌 마켓 전략 등을 주로 수행하는 운용부서입니다. 해당 부서는 품질 유지에 필요한 자원 및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진 조직으로 이 투자신탁 역시 투자대상 및 운용전략이 해당 부서에서 운용하는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보수율로 책정되더라도 품질 유지 차원에서 차질없이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집합투자업자(키움투자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iwoomam.com/announce/KI0608020000M?gubun=gongsigongsi&pageNo=1&schGubun1=title&schContent=%EC%88%98%EC%88%98%EB%A3%8C&seq=9838>)

주1) 회사는 상품 구조 및 운용에 있어 잠재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상품 제공의 효율성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상품전략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원장 : 투자솔루션본부장

2. 위원 : 경영전략본부장, 리스크관리 본부장 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컴플라이언스 본부장, 금융소비자보호실장, 주식운용본부장, 채권운용본부장, 헤지펀드 본부장, 멀티에셋운용본부장, ETF운용본부장, 홀세일본부장, 리테일본부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